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변경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자치구 위임

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무 환수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위임 종료 사무 정비

-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대한 사무 삭제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마.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협의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길상은 (☎ 2133-674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실”을 “여성가족실”로 한다.

별표의 민생노동국 표 주관부서란 중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과”로 하고, “농수산유통담당관”을 “농수산유통과”로 하며, 민생노동국 표를 시민건강국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경제실 표 주관부서란 중 “전략산업기반과”를 “산업입지과”로 한다.

별표의 교통실 표 중 주차계획과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	--	---	--------------------------

별표의 교통실 표 중 교통지도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녹색에너지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	------------------------------	--	-----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대기정책과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대기정책과란 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란 및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	---	--	-----

	<p>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p> <p>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p> <p>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p>		
<p>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p>	<p>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집·운반업, 재활용업에 한함)</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검사 등</p> <p>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바. 과태료 부과·징수</p>	<p>○ 「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7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9조</p> <p>○ 「폐기물관리법」 제33조</p> <p>○ 「폐기물관리법」 제68조</p>	<p>구청장</p>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자원순환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자원순환과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p> <p>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p> <p>○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p>	<p>구청장</p>
--	--	---	------------

별표의 문화본부 표 중 문화예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관광체육국 표 중 체육정책과란의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1호가목의 사무명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사무명란 중 “병원”을 “종합병원·병원”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보건의료정책과 제6호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스마트건강과”를 “건강관리과”로 한다.

별표의 행정국 표 다음에 건설기술정책관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설기술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혁신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수리 다. 등록의 경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라. 등록의 말소 등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부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구청장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청장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나. 검사의 명령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구청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중 건설혁신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재난안전실 표 주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보행환경개선과”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주택정책과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주택정책과란 다음에 임대주택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	-------------------------	---	-----

별표의 주택실 표 주관부서란 중 “공동주택지원과”를 “공동주택과”로 하고, 공동주택과란(중전의 공동주택지원과란)을 건축기획과란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주택실 표 중 건축기획과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 「건축사법」 제29조	
	라. 보고 및 검사	○ 「건축사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	-------------------------------------

별표의 정원도시국 표 중 자연생태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조제2항	구청장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생략)	1. (생략)	○ (생략)	(생략)

여성가족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민생노동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공정 경제 담당관	1. (생략)		구청장
농수산 유통 담당관	1. (생략)	○ (생략)	구청장

민생노동국(→시민건강국 다음으로 이동)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공정 경제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수산 유통과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창의 행정 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생략)	(생략)

기획조정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조직 담당관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전략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경제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산업 입지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차 계획과	(신설)	(신설)	(신설)

교통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주차 계획과	2.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교통 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 의장 사업소 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3.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직속기관 의장 사업소 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후 환경 정책과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대기 정책과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대기 정책과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물재생 계획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물순환 안전국) (→녹색 에너지과 이동)	1. (현행과 같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경우에 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 ·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 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 38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자원 순환과 자원 회수 시설과	1.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대상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 시 입지 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 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 지후보에 대한 타 당성 조사의 전문 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 당지역 주민에의 공 개 및 공개에 필요 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 해 지방자치 단체 장과의 협의 및 중 양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 신청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자원 순환과 생활 환경과	1.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업, 재활 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 금 처분 및 이에 따 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 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 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생략) 구청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처리 금지 명령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생활 환경과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구청장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생략)	○ (생략)	(생략)
	4. (생략)		
	가. (생략)	○ (생략)	
	나. (생략)	○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문화본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마. 영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 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체육 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생략)	
	다. (생략)	○ (생략)	
	라. (생략)	○ (생략)	
	마. (생략)	○ (생략)	
	바. (생략)	○ (생략)	
	사. (생략)	○ (생략)	
	아. (생략)	○ (생략)	
	자. (생략)	○ (생략)	

□ 관광체육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나. (현행 다목과 같음)	○ (현행 다목과 같음)	
	다. (현행 라목과 같음)	○ (현행 라목과 같음)	
	라. (현행 마목과 같음)	○ (현행 마목과 같음)	
	마. (현행 바목과 같음)	○ (현행 바목과 같음)	
	바. (현행 사목과 같음)	○ (현행 사목과 같음)	
	사. (현행 아목과 같음)	○ (현행 아목과 같음)	
	아. (현행 자목과 같음)	○ (현행 자목과 같음)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략)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	○ (생략)	

□ 시민건강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	○ (현행과 같음)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구청장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재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건설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		구청장

□ 재난안전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혁신과	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삭제)	(삭제)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삭제)	(삭제)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삭제)	(삭제)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삭제)	(삭제)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삭제)	(삭제)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삭제)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삭제)	(삭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삭제)	(삭제)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삭제)	(삭제)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삭제)	(삭제)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	(삭제)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삭제)	(삭제)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삭제)			(삭제)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삭제)	(삭제)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 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구청장 구청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 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보행환경개선과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2. (생략) 3. (생략)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생략) ○ (생략)	구청장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주택실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현행 제2호와 같음) ○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대주택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구청장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동 주택 지원과	1. (생략)		(생략)
건축 기획과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 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생략)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공동 주택과 (→건설 혁신과 다음으로 이동)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수리·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27조 ○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 「건축사법」 제29조 ○ 「건축사법」 제30조 ○ 「건축사법」 제41조 ○ 「건축사법」 제22조의2 제1항	(현행과 같음)

□ 정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자연 생태과	(신설)	(신설)	(신설)

□ 정원도시국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현행과 같음)	4.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 시설의 관리·감독 사무 가. 변경신고 수리 나. 과태료 부과·징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부칙 제3 조제2항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길상은(☎ 2133-6744)